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공공재정지급금 특정감사 —

2024. 5.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순번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통보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2건	-	1	1	2	***				
1	☆☆☆☆☆과	회의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	-	1	1	***	-	-	-	-
2	△△△△과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	1	-	1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1. 회의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 3
2. 지방보조사업 정산처리 미이행 (시정) ..... 7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회의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에서는 ◇◇◇◇◇◇◇◇◇에 경북형 ○○○○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워크숍을 통해 ●●●● 기획 방향을 결정하고, ●●●● 시범 주거단지 건설방안 토론회를 위한 ‘○○○○ 포럼개최(●●●● 포럼)’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아래 [표1]과 같이 교부하였으며, ◇◇◇◇◇◇◇에서는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 \*, \*\*, 경상북도 ○○○○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하였다.

[표 1] ◇◇◇◇◇◇◇◇◇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명	연도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자부담	
◇◇◇◇◇◇◇◇◇ (대표 ○○○○)	○○○○ 포럼개최 (●●●● 포럼)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회의 참석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하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하여 참석수당 등에 대한 적정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당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적정히 검토하지 않고 아래 [표2]와 ◇◇◇◇◇◇◇◇가 ♣♣♣ 등 8명에게 지급한 강사료 \*,\*\*\*,\*\*\*(원)에 대한 원천징수(\*\*\*,\*\*\*(원))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 정산을 처리하였다.

[표 2] 자문위원 참석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회의 현황		자문위원	자문수당 지급액 (교통비 등 포함)	원천징수 (여/부)	미징수 원천징수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고
일자	회의명					
		합계	*,***,***(원)		***,***(원)	
2022.4.18.	○○○○ 자문회의	♣♣♣	***,***(원)	부	***,***(원)	
		□□□	***,***(원)	"	***,***(원)	
		◇◇◇	***,***(원)	"	***,***(원)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2022.11.30.	천년을 지향하는 ☎포럼 ●●●● 자문회의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2.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201목) 다. 운영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회의 등에 보조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참석수당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불인정하고 정산 시 반환받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적정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직접 주최하는 자문회의 등 행사에 참석한 보조단체 대표에게 지급된 참석수당을 반환받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보조사업자(단체)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

보조사업자	회의 현황		사업연도	참석자	참석수당 지급액	비고
	일자	회의명				
합계					***,***(원)	
◇◇◇◇◇◇◇◇ (대표 ○○○○)	****.*.**. (2022.04.18)	○○○○ 자문회의	**** (2022)	○○○○	***,***(원)	
	****.*.**. (2022.11.30)	●●●● 자문위원 워크숍			***,***(원)	
	****.*.**. (2022.11.30)	상동			***,***(원)	

조치할 사항 ☆☆☆☆☆과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참석수당 지급에 따라 징수되어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시고, (시정)
- 보조단체에서 직접 추진한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 중 보조단체 대표자에게 지급된 참석수당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前 ▲▲▲▲▲과)에서는 (사)□□□□□□□□□□협의회에 ㉔㉔㉔㉔㉔㉔ 자질 향상, 회원사 간 네트워크 및 유대강화를 위한 '\*\*\*\*년 ㉔㉔㉔㉔㉔ 경영연수' 사업에 보조금을 아래 [표1]과 같이 교부하였으며, (사)□□□□□□□□□□협회에서는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㉔㉔㉔㉔㉔ 교육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개최하였다.

[표 1] (사)□□□□□□□□□□협회의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명	연도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자부담	
(사)□□□□□□□□□□ □□□□□□□□협회	****년 ㉔㉔㉔㉔㉔ 경영연수	****	**,***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6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하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강사료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하여 강사료 등에 대한 적절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당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적정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사)□□□□□□□□□□협회가 ㉔㉔㉔ 등 3명에게 지급한 강사료 \*,\*\*\*,\*\*\*원에 대한 원천징수(\*\*\*,\*\*\*원)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 정산을 처리하였다.

[표 2]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연도	강사	강사료 지급액	원천징수 (여/부)	미징수 원천징수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고
합계			3	*,***,***		***,***	
(사)■■■■ ■■■■ 협의회	****년 ■■■■■■ 경영연수	***	■■■■	***,***	부	** ,***	
			■■■■	*,***,***	//	***,***	
			■■■■	*,***,***	//	** ,***	

조치할 사항     △△△△과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강사료 지급에 따라 징수되어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